"이 부분은 범죄사실 및 불기소이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를 하지 아니합니다."

범죄사실

피의자1) 진대제는 정보통신부 장관인 자, 피의자2) 성상호는 인터넷서비스[illegible] [illegible] 160여개 정보통신관련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illegible] [illegible]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illegible] [illegible]협회의 대표 회장인 자, 피의자3) 박상대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illegible] [illegible] 신용정보업자로 전국의 은행과 보험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집중 운영 [illegible] 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인 자로

가. 피의자1) 진대제는 인터넷 상 정보통신부 참여 게시판 상에서 그 이용자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글을 올리고자 하면 그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이의 실명확인을 피의자2) 정정호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의뢰하고,

나. 피의자2) 정상호는 위 의뢰에 대하여 자신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 데이터 베이스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계된 신용거래를 위해 수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목적에 어긋나게 신용정보가 아닌데도 위 정보통신부장관의 의뢰에 응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고,

다. 피의자3) 박상태는 개개인들이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이나 보험계약 시 제공한 개개인의 금융정보를 그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명확인서비스라는 사업 하에 개개인들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위 피의자1)의 '가'항 행위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11조, 같은 2), 같은 3)의 '나', '다'항 행위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24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 수사한 바,

피의자1) 신대제, 같은2) 정상호, 같은3) 박상태는 각 [illegible] 소사지 아니하였으나 [illegible]

[illegible]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행정사무관 **참고인 유형주**(만30세)를 [illegible] 소사한 바,

2002. 8. 말경부터 참여 게시판 서비스를 시작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9조 및 직제시행규칙, 정보통신부사무분장세칙 등에 의해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받은 후 이의 실명확인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의뢰하

고 있는 것으로

일단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2002. 8.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 시부터 실명확인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하고 있다는 것을 공고하였으며

위반법으로 제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와 관련하여 동조항의 의무 당사자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무담당자로 해석이 되어 정보통신부 장관이 동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이유가 없으며,

동 제11조의 취지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시스템 상으로만 정보가 수집, 처리, 이동되게 하고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협회는 기입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지 않고 확인 후 바로 삭제하여 왔으므로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더욱이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11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며

정보통신부 [illegible] 의견제시원의 인쇄본, [illegible] 정보통신산업협회장에게 발송한 [illegible] 실명확인을 위한 [illegible] 공문, 각 근거 법률을 제출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신용사업팀 [illegible] 참고인 **송윤철**(만38세)을 출석시켜 조사한 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1987.경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최초 설립되어 1998. 4. 9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재정경제부(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명칭 변경 및 설립된 단체로

2002. 8.경 정보통신부로부터 요청공문이 와 실명확인 작업을 해 주고 있으며

법상 공공기관의 요청·열람 조항이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실명확인 요청을 한 것이라 진술하며

정보통신부장관 명의 인터넷 실명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재정경제부장관 명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통보 및 집중관리·활용대상 정보승인 공문, 금융감독원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공문, 각 사이트 상 '회사는 회원 정보를 회원 본인의 실명여부 확인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활용할 수 있습니다'라 적시된 인쇄물을 각 제출하고,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차장 **참고인 이호제**(만38세)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공공기관과 '야후'와 같은 인터넷 관련 업체에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이나 '다음', '야후'와 같은 사이트에서 소비자와의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용은 최초 개개인이 금융권으로부터 개인정보동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형성된 데이터로 동의부분을 거쳐 실명확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1995. 재정경제부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았으며 신용조회의 한 부분으로 실명확인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진술하며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업허가증 사본, 관련법령 등을 제출하는 바,

본 건

피의자 등의 실명확인 서비스 등의 요구 및 제공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 그 법률위반의 점 발견키 어렵고, 오히려 고발인 진보네트워크의 주장은 실명확인 없이 정보통신부 참여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 국민의 기본권 문제의 논의에 가까운 바 있어 모든 피의자에 대해 각 불기소(혐의없음)의 견임

2003. . .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장 귀하

서 울 지 방 검 찰 청

(530 - 4774)

분류기호 및 2003. 9. 23.
문 서 번 호 9126
수 신 오병일 발 신 서울지방검찰청
제 목 공소부제기이유고지 검 사 이 윤 홍 인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2003 형제 47803 호
② 고 소 인 성 명		오병일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1.가.진대제 2.나.정장호 3.나.박상태
	④주민등록번호	생략
⑤ 죄 명		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⑥ 처 분 연 월 일		2003. 9. 17.
⑦ 처 분 요 지		각 혐의없음
⑧ 공 소 부 제 기 이 유		별첨과 같음
⑨ 비 고		0.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음. 0. 무고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인한 고소이므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키 어려움.

서 울 고 등 검 찰 청

2003 검 2003. 12. 26.

수 신 **오 병 일** 귀하 발 신 서 울 고 등 검 찰 청

제 목 **항고사건 처분통지** 검 사 **박 경 순**

진 대 제외2 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

처분	사 건 번 호	**2003 불항 제 5670 호**
	연 월 일	**2003. 12. 26.**
	결 과	결정주문 : **항고기각** 이 유 : 원 검찰청검사의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음.

비 고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항고(검찰청법 제10조②)를 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항고장을 위 기일 내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람.

대 검 찰 청

수 신 **오 병 일 귀하**
서울시 용산구 [redacted]

발 신 대 검 찰 청
검 사 **홍 경 식** ㊞

제 목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진대제외 2명에 대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처분	사건번호	**2004** 년 불재항 제 591 호
	년월일	**2004. 3. 4.**
	결과	결정주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비 고 :